

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(제21조제1항제2호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 일수 또는 제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,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(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)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가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.
- 다. 1일 평균매출액은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 다만, 신규사업·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·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매출액을 환산한다.
- 라.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제2호나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.
- 마. 제2호 과징금의 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으로 한다.

2. 과징금의 산정방법

가.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의 산정방법

사업정지·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$\text{과징금 부과금액} = \text{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} \times \text{사업정지·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일수} \times 0.18$$

나. 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방법

종별	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	사업정지·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
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종	30톤 이하	3만원
2종	30톤 초과 100톤 이하	10만원
3종	100톤 초과 500톤 이하	40만원
4종	500톤 초과 1,000톤 이하	60만원
5종	1,000톤 초과	80만원